

# 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|                | 368,039,855 | 11,041,196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| 340,775,355 | 10,223,261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| 27,264,500  | 817,935  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| 27,264,500  | 817,935    |
|      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| 9,634,364   | 289,031    |
|      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| 13,192,500  | 395,775    |
|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| 405,908     | 12,177     |
|      |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| 4,031,728   | 120,952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,000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예비비는 3,411,915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